

[사 건 명] 행심 2017 - 7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5일(보호자동반  
특별교육 1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2시간씩)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7. 10. 12. 그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써주었던 ○○○ 학생이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소  
년원에 가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청구인은 ○○○ 학생  
에게 □□□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을 가고, 소년원에 가고, 담임선  
생님 및 교감선생님이 막아준다’ 등의 내용의 말을 카카오톡 문자메  
세지로 전하였는데, ○○○ 학생은 대화 이 내용 일부를 □□□ 등  
7명 학생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전달

하여 청구인의 공개사과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공개사과를 하였음.

라. 이후 □□□ 학생의 모친이 청구인과 ●●● 학생의 둘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1.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이수 3일(2시간씩),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각각 4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017. 11. 30. 본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학생과 청구인의 대화는 ●●● 학생이 □□□ 학생 측에 전달할 의도를 갖고 청구인의 부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므로 대화 상대방 간의 대화 목적이 다르며,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청구인이 ●●● 학생에게 전한 말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소 과장되게 전달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에서 언급하는 사이버 따돌림이라고도 할 수 없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담임교사는 청구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직업체험 시 학폭위 조치와 관련된 학생들과 같은 조로 편성하여 학폭위에서 결정한 접근 금지 조치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나. 관련 학생들의 보복행위를 허용하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는 관련 학생 및 전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였고, 반장에게도 주위를 잘 살피라고 전하였으며, 연락 없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등 신경을 써주고 있는 상황이다.
- 다. 담임교사는 두 학생의 의사에 따라 공개사과가 이루어졌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담임종결로 처리하고자 한 것이며, 반 학생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이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17. 10. 7. □□□ 등 7명의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탈의실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일과 관련한 재심사건에서 청구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던 ○○○ 학생과 청구인은 2017. 10. 2.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 학생이 청구인에게 먼저 ‘○○○이 소년원에 가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청구인은 ○○○ 학생에게 ○○○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을 가고, 소년원에 가고, 담임선생님 및 교감선생님이 막아준다’ 등의 내용의 말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 학생과 둘만이 하는 문자대화 중 먼저 ○○○ 학생이 ○○○ 학생이 소년원에 가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청구인은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할 것인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 학생에게 물어보았으며, ○○○ 학생은 당시 명시적으로 문자메세지 상에 ‘ㄴㄴ’(이는 ‘노노’라는 글자의 초성을 이용한 표현이며, 영문의 ‘No No’의 한글표기로서 대화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됨)라고 표기함으로써 대화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에 ○○○ 학생과의 문자대화를 이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과 ○○○ 학생이 대화를 나눈 후 ○○○는 청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 등 여러 학생에게 이를 단체대화방에서 공개를 하였으며, 이러한 일로 청구인은 공개사과까지 하였지만 ○○○의 모친이 이를 다시 문제 삼아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은 학폭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전 자신이 피해를 당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한 재심절차에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던 ○○○ 학생과 단 둘만의 문자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먼저 ○○○ 학생에 “□□□ 학생이 소년원에 가냐”고 묻자, 청구인은 ○○○ 학생에게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물어보았고, 이에 ○○○는 말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 학생의 말을 믿고 ○○○와 대화를 이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2) 또한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그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다소 과장되게 주관적인 의견을 ○○○ 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질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대화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대화 내용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 학생과 대화에 앞서 자신과의 둘만의 대화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는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을 하자, 이에 청구인은 그 전에 이미 자신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는 도움을 주었던 ○○○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청구인은 ○○○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대화를 이어갔던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과 ○○○ 학생과의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고, 그러한 청구인의 믿음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스스로 여러 학생들과 대화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로 청구인은 서면사과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공개사과를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같은 행위로 인해 또 다시 다른 처분조치나 처벌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 진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이 ○○○ 학생과 문자로 나눈 대화 내용은 자

신의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말한 주관적인 견해 표명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대화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 학생에게 전한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는데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또한 이미 서면사과보다 중하고 할 수 있는 공개사과를 한 청구인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의 처벌의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 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